

# 신길6생활권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(안)에대한의견청취 심 사 보 고 서

2001. 5. 4.  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3월 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년 3월 21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79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01년 4월 26일) 상정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김성학)

- 가. 제안이유
  -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토록 함에 따라 토지이용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토록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코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위치 : 신길동 506번지 일대(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주변)
  - 면적 : 71,600㎡(약 21,600평)
  -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: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146호('98.4.22)

## 3. 심사결과 : 의견 없음

# 신길6생활권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(안)에대한의견청취

의 안 번 호	170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3. 9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안전명 :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(안)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	
	기 정	변 경 전	변 경 후			
주 거 지 역	소 계	71,600	-	71,600	100.0	
	일반주거지역	48,600	△ 48,600	-	0.0	
	2종일반주거지역	-	32,595	32,595	45.5	7층이하
	3종일반주거지역	-	8,185	8,185	11.4	
	준주거지역	23,000	7,820	30,820	43.1	

## 2. 현황

- 위치 : 신길동 506번지 일대(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주변)
- 면적 : 71,600㎡(약 21,600평)
-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: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146호('98.4.22)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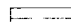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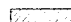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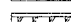
## 3. 제안이유

-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토록함에 따라 토지이용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토록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코자 함.

첨 부 : 용도지역(일반주거지역)세분 도면 1부

# 영등포구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

## 범례

-  지구단위계획구역
-  획지경계선
-  준주거지역
-  제3종일반주거지역
-  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
-  중심지마관지구
-  일반마관지구

지역·지구의  
변경에 관한  
도시계획결정도

S=1:2,000

